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창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창업벤처혁신실에 청년정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중소기업정책실과 창업벤처혁신실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제12조제3항제6호 및 제21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57호”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호 및 제12조제3항제57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재도약정책과”를 “재도약정책과, 미래산업전략팀”으로,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을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미래산업전략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미래산업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2. 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관련 기관·단체로부터의 의견
수렴

5. 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관련 현안대응 및 동향분석

6. 기타 기술혁신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16항(중전의 제15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항(중전의 제16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 지원

제10조제6항 중 “기술창업과, 창업촉진과, 창업생태계조성과, 미래산업 전략팀”을 “기술창업과, 청년정책과, 창업촉진과, 창업생태계조성과”로,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미래산업전략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을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2호 및 제12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0항, 제11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산업전략팀장”을 “청년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관련 부 내 총괄·지원

2. 부내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3. 부내 청년정책 과제발굴 및 관리

4. 부내 청년정책 청년정책의 교육·홍보
5. 청년정책과 부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 및 협력
6. 청년정책 관련 업무의 기관 간 협조
7. 부내 청년정책 현안관리 및 이슈대응
8. 그 밖에 부 내 청년정책 관련 업무
9. 청년창업 제도기반 조성 및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10. 청년창업정책의 성과점검 및 관리 관련 업무
11. 대학내 창업지원전담조직 지원 및 창업친화적 제도 활성화 관련
업무
12. 청년창업 정책 관련 국내외 사례 연구 및 통계 관련 업무

별표 3 중 총계 “475”를 “479”로 하고, 일반직 계 “469”를 “473”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6”을 “27”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64”를 “165”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38”을 “139”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28”을 “29”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75”를 “479”로 하고, 일반직 계 “469”를 “473”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6”을 “27”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

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75”를 “176”으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30”을 “131”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25”를 “26”으로 한다.

별표 7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창업벤처혁신실 청년정책과	4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① ~ ③ (생 략)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호 및 제21호부터 제5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 ----- --- 제21호----- ----- -----.
⑤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57호부터 제7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호 및 제12조제3항제57호----- -----.
⑥ 중소기업정책실에 정책총괄과, 일자리정책과, 정책평가과, 통계분석과, <u>제도약정책과</u> , 글로벌성장정책과, 기업금융과, 판로정책과, 국제협력과, 지역혁신정책과, 지역기업육성과 및 지역특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u>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u> 으로 보한다.	⑥ ----- ----- ----- <u>제도약정책과, 미래산업전략팀</u> ----- ----- ----- ----- <u>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미래산업전략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u>

⑦ ~ ⑪ (생 략)

<신 설>

⑫ ~ ⑭ (생 략)

⑮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⑦ ~ ⑪ (현행과 같음)

⑫ 미래산업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2. 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관련 기관·단체로부터의 의견 수렴

5. 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관련 현안대응 및 동향분석

6. 기타 기술혁신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⑬ ~ ⑮ (현행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와 같음)

⑯ -----
-----.

⑦ (생 략)

⑧ 기술창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 략)

12. 대학 내 창업지원전담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12의2. 청소년 및 대학생 등 청년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 14. (생 략)

⑨ · ⑩ (생 략)

⑪ 미래산업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2. 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관련 기관·단체로부터의 의견 수렴

5. 기타 기술혁신 분야 유망 중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 1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13. · 14. (현행과 같음)

⑩ · ⑪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

⑨ 청년정책과장-----
-----.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관련 부 내 총괄·지원

2. 부내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3. 부내 청년정책 과제발굴 및 관리

4. 부내 청년정책 청년정책의 교육·홍보

5. 청년정책과 부내 다른 정책

<u>소·벤처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⑫ ~ ⑮ (생 략)	<u>· 계획 등과의 연계 및 협력</u> <u>6. 청년정책 관련 업무의 기관 간 협조</u> <u>7. 부내 청년정책 현안관리 및 이슈대응</u> <u>8. 그 밖에 부 내 청년정책 관련 업무</u> <u>9. 청년창업 제도기반 조성 및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u> <u>10. 청년창업정책의 성과점검 및 관리 관련 업무</u> <u>11. 대학내 창업지원전담조직 지원 및 창업친화적 제도 활성화 관련 업무</u> <u>12. 청년창업 정책 관련 국내외 사례 연구 및 통계 관련 업무</u> ⑫ ~ ⑮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475</u>		<u>479</u>	+4	
	.		.		.		
	.		.		.		
일반직	계		<u>469</u>		<u>473</u>	+4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26</u>		<u>27</u>	+1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							
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							
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u>164</u>		<u>165</u>	+1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시설주사 · 방송통 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u>138</u>	<u>139</u>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 주사보 · 통계주사보 · 시설주사 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u>28</u>	<u>29</u>	+1
·	·	·	
·	·	·	

■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75	479	+4
일반직 계	469	473	+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6	27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 사무관 · 통계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 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75	176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시설주사 · 방송통 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u>130</u>	<u>131</u>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 주사보 · 통계주사보 · 시설주사 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u>25</u>	<u>26</u>	+1
·	·	·	
·	·	·	